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75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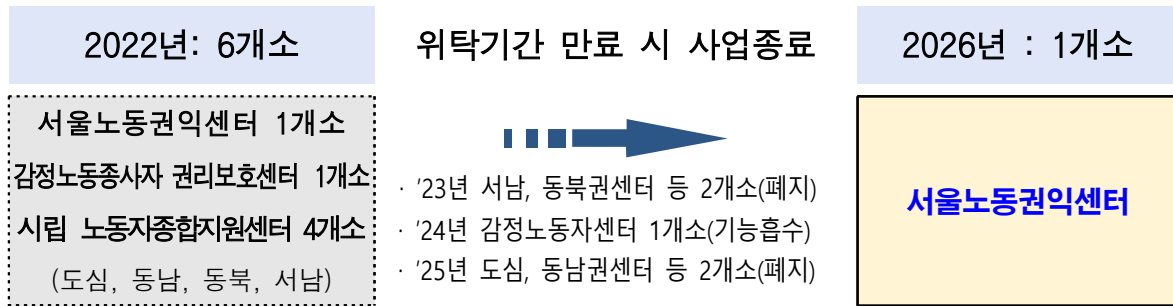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에 따라 설치한 시설임
- 나. 노동복지시설인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폐지하여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 등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노동자 권리보호 서비스 통합 제공과 조직·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 무 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기간 : 3년(2024.1. 1. ~ 2026.12.31.)
- 조직인력 : 총 3팀 67명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49명, 쉼터인력 14명)
 - 통폐합 시기(종료기간 도래시)에 따라 종사자 고용승계 및 팀 배치
- ※ 연도별 인력규모(안) : ('24년) 3팀 46명 → ('25년) 3팀 57명 → ('26년) 3팀 67명



○ 위탁시설

- 시설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5층
- 규모 : 전용면적 266.08 m^2
- 소유자 :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 노동정책담당관)
- 시설현황 및 사용계획
 - '24~ '26년 현 장소(전태일기념관 5층) 사용, '26년 말 서울시 복지관 입주
-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공간 문제로 서울시 복지관 신축('26년 하반기) 전 까지 현재 장소(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에서 기능 수행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개별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 지원 사업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위탁내용

- 서울시 노동센터 기능 재정비를 통한 취약노동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서울노동포털 기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비대면 서비스 구현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전략사업 발굴 시행
-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사업 (컨설팅, 교육, 안전장비 보급 등)
-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운영
-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지원사업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 청소년 및 특성화고 노동권리 보호
- 노동인식개선을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 추진
-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감정노동종사자 근로환경 및 여건개선 사업
- 감정노동종사자 관련 교육 및 강사양성 사업
-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노동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등
-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위탁 필요성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비조직화된 노동자 개개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재된 노동자 지원기능의 통·폐합이 필요하여 노동권익센터의 기존 역할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함
- 이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노동권익센터의 기존 역할에 덧붙여 통합예정인 노동센터의 기능과 조직 대내·외에서 요구되는 신규 기능을 포함, 노동권익센터의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민간기관에 노동권익센터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노동기본조례

제13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과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지원
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권역별·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책 지원
7.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필요

○ 2024년 예산편성(안) : 6,066백만원 ※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 가능

〈 2023년 최종예산〉

- ◆ 서울노동권익센터 2,720백만원
- ◆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4개소) 3,067백만원
-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1,149백만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작성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차진주(☎ 2133-5418)